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자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 적 : 새마을사업 지원

나. 주요골자

○ 새마을사업을 위한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
-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 소도읍 가꾸기사업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 분산농지의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
-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 소도읍 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도는 토지의 대체 취득시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의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새마을사업을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